

의안번호	2211034
의 퇴 인	김장겸의원
회 답 일	2025. 7. 16.
추계번호	25C342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돌보미¹⁾에게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 839억원, 2031년에 905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4,321억원(연평균 864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손자녀돌봄수당 지급 (안 제19조의3 신설)	839	843	857	878	905	4,321	864

주: 1. 지원대상이 되는 손자녀돌보미의 범위, 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2. 개정안에 따른 손자녀돌봄수당 지급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나 현시점에서 손자녀돌봄수당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하지 않고 추가재정소요의 총액만 제시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의3 신설 (손자녀돌보미의 교육·등록 및 손자녀돌봄수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자녀돌보미에게 돌봄대상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제2항)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와 등록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의 기준, 금액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1) 안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손자녀돌보미”란 아이의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아이의 조부모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9조의3 신설 (손자녀돌보미의 교육·등록 및 손자녀돌봄수당)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되는 영유아의 수를 기준으로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액을 산출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매월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명의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수당을 추가 지원할 것인지 여부와 추가 지원 규모 등을 적절히 설정하기 어렵고, 활용 가능한 통계(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도 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구 단위 추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액을 추계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또한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의 요건으로 교육과정 이수 외에 다른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돌봄수당 지급기준에도 소득 요건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손자녀돌보미 모두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가정함
 -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사업 중 지원비용을 시간 단위로 산정하는 사업도 있으나, 서비스 신청과 계약, 비용 정산 등 엄격한 이용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 돌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비용 지원 방식을 손자녀돌보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손자녀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월 단위로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함

-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의결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손자녀돌보미에게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될 영유아의 수에 연령별 연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될 영유아의 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연령별(0~5세) 영유아 수에 낮 시간 동안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영유아의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 개정안은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현행법상 정의에 따른 영유아의 연령 기준(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손자녀의 연령을 0~5세로 가정함
 - 낮 시간 동안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영유아의 비율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른 연령별 조부모 양육 비율(연령별 조사 대상 영유아 중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이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인 영유아의 비율)을 준용하고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표 2] 참조)
 - 본 추계에서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부모 전체가 연초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손자녀돌보미로 등록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해당 인원수가 연중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¹⁾

1) 손자녀돌보미 등록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영유아를 양육함에도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등으로 손자녀돌보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손자녀돌보미 지원 신설에 따른 수요 증가와 월별 이용 인원 변화 등은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표 2] 연령별 조부모 양육 비율(2024년 기준)

(단위: %)

	부	모	부모 형제 자매	친조부모	외조부모	기타 친인척	이웃, 지인, 민간 육아 도우미 등	공공 아이 돌보미	기관에 맡김	없음	합 계
0세	4.1	69.2	0.2	1.7	3.3	0.2	0.3	0.8	19.7	0.4	100.0
1세	2.3	34.2	0.4	1.2	3.4	0.0	0.3	0.3	58.0	0.0	100.0
2세	0.7	27.0	0.3	0.8	3.2	0.2	0.4	0.0	67.4	0.0	100.0
3세	1.3	28.5	0.0	1.3	2.9	0.1	0.3	0.1	65.3	0.0	100.0
4세	2.4	29.1	0.0	2.6	1.3	0.6	0.4	0.0	63.7	0.0	100.0
5세	1.3	28.6	0.3	1.0	3.5	0.2	0.0	0.1	65.0	0.0	100.0
전체	2.1	37.3	0.2	1.5	2.9	0.2	0.3	0.2	55.2	0.1	100.0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2025. 5.)

[표 3]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되는 영유아 수: 2027~2031년

(단위: 명)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0세	11,392	11,900	12,364	12,770	13,110
1세	9,955	10,448	10,912	11,337	11,708
2세	8,663	8,658	9,086	9,489	9,857
3세	9,588	9,098	9,094	9,542	9,965
4세	9,484	8,896	8,442	8,439	8,855
5세	11,582	10,926	10,249	9,727	9,723
합 계	60,664	59,926	60,147	61,304	63,217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연령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영유아 수에 낮 시간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비율을 적용

- (연령별 연간 지원단가) 연령별 연간 지원단가는 현행 시간제보육의 지원 수준에 준하는 금액(월 18만원)에서 현행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2세 이상 월 10만원)을 차감한 후 지원개월 수(12개월)를 곱하여 산출
 - － 월 지원단가는 현행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²⁾의 돌봄 지원단가를 준용하여 월 지원

2) 현행 보육체계는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유치원·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와 양육수당(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간 중복 지원을 금지하되,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라 하더라도 긴급하거나 제한적인 돌봄 수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시간제 서비스에 한해서만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있고, 개정안은 “손자녀돌봄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고 중복 지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현재 운영 중인

한도(60시간)에 시간당 지원단가(3,000원³⁾)를 곱한 18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시간제보육 및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일부 이용하면서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용 시간만큼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액 단가를 차감하여야 할 것이나, 손자녀돌보미 지원을 받으면서 시간제보육 또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영유아의 수를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모든 손자녀돌보미에게 동일한 지원단가(월 18만원)를 적용하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세 이상 영유아⁴⁾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액 단가에서 차감(월 8만원)하여 적용함⁵⁾

[표 4]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만원, 개월,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조부모 양육 영유아 수(A)	0세	11,392	11,900	12,364	12,770	13,110	61,536	12,307
	1세	9,955	10,448	10,912	11,337	11,708	54,359	10,872
	2세	8,663	8,658	9,086	9,489	9,857	45,753	9,151
	3세	9,588	9,098	9,094	9,542	9,965	47,287	9,457
	4세	9,484	8,896	8,442	8,439	8,855	44,116	8,823
	5세	11,582	10,926	10,249	9,727	9,723	52,207	10,441
월 지원 단가(B)	0~1세	18	18	18	18	18	90	18
	2~5세	8	8	8	8	8	40	8
지원개월 수(C)		12	12	12	12	12	-	-
합 계(A×B×C)		839	843	857	878	905	4,321	864

주: 1. 지원대상이 되는 손자녀돌보미의 범위, 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2. 개정안에 따른 손자녀돌봄수당 지급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나 현실점에서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액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하지 않고 추가재정소요의 총액만 제시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시간제 서비스 중 손자녀돌보미와 가장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는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이나, 이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한하여 소득 수준별로 보육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어 손자녀돌보미의 지원 단가에 준용하기 어려움. 이에 본 추계에서는 보편적 보육 지원 사업인 “시간제보육”의 이용 한도와 단가를 준용하여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액을 추계하는 것으로 전제함

3) 시간제보육의 이용단가는 시간당 5,000원이며, 이 중 3,000원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

4)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2025년 기준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있어 가정양육수당(0세 월 10만원, 1세 월 10만원)을 지급받을 유인이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모두 손자녀돌보미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 것으로 가정함

5) 본 추계에서는 장애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단가 할증,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 등에 따른 단가 인상·인하 요인은 고려하지 않음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는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손자녀돌보미의 범위, 돌봄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액은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되는 영유아의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매월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
 -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될 영유아의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0~5세)에 따른 연령별 영유아의 수에 낮 시간 동안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영유아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연초에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전체가 손자녀돌보미로 등록된 뒤 해당 인원수가 연중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등록 탈락, 미등록, 지원 신설에 따른 수요 증가 및 월별 이용 인원 변화 등 인원 수 증감 요인은 고려하지 않음
 - 연령별 월 지원단가는 시간제보육의 월 지원 한도(60시간)에 시간당 지원단가(3,000원)를 곱한 18만원에서 현행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2세 이상 월 10만원)을 차감한 후 지원개월 수(12개월)를 곱하여 산출하고, 추계기간 동안 해당 단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단가 할증 및 삭감 요인 등은 고려하지 않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